

■ 민방위·화생방 장비 규모별 보유기준(2018년)

① **방독면 :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

② **민방위장비 규모별 보유기준**

장비명	동별	내구 연한	민방위대원수(직장대, 기술지원대)						
			100명 미만	100~ 300	300~ 500	500~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통 2개당 1개	10년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통 50개당 1개	10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통 4개당 1개	3년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통 7개당 1개	5년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통 3개당 1개	10년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통 5개당 1개	10년	2	4	6	8	10	12	14

③ **화생방장비 규모별 보유기준**  **대원 100명 이상 직장대 해당**

○ 화생방분대 장비 : 2012년 생산품까지 폐기(지정폐기:MARK-1, DS2)

구분	확보기준	기술지원대 (1개대 20명 기준)	직장대 (1개분대 10명 기준)	비고
보호의	개인당	1벌	1벌	
탐지지	대당	2개	1개	
오염표지판	대당	8세트	4세트	
휴대용제독기	대당	6대	3대	
제독용액(DS2)	제독기당 2통	12통	6통	
해독제(MARK-1)	탐지반원당	1개		
제독키트(KD-1)	제독반원당	1개		

④ **2017년도 장비물자 성능검사 결과 조치사항**

○ **일반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전량 폐기 처리[일반방독면 만 구매]**

- KSM 6685(삼공물산), SCA 123SD(산청)

○ **K-1방독면 : '07년 생산품까지 폐기**

※ 2010년 이후 생산품 구매금지(군인, 예비군용)

○ **국민방독면 : 전량폐기(KS부적합)**

◦ 화재용 정화통 : 직장, 동 자체 폐기(일반쓰레기)

※ **정화통 폐기업체 : 초심 031-319-9032**